

1. 개정이유

최근 전세사기가 성행하고, PF시장 침체 등 주거불안 요인이 이슈화됨에 따라 공적보증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였으며, 서민 주거안정 위한 공사의 보증발급 급증 등으로 공사의 법정 보증한도(70배) 초과가 전망됨에 따라 공사의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확대하여 임차인 보호, 주택공급 지원 등 정책보증의 공급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 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명확히 하고, 질권 설정 등 담보제공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있어,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제공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신설하여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안 제21조제1항, 제27조제2항)

- 공사의 보증업무 종류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명시, 보증업무 신설로 인한 관련조항 인용번호 수정

나. 보증의 한도 (안 제23조제1항)

- 공사가 발급가능한 보증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증가

다. 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안 제25조의3제2항,제3항,제4항)

- 공사가 보증신청인에게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증신청인이 공사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 규정

라. 금융정보 등의 제공 (안 제25조의4제1항,제2항,제3항)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공사가 금융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심의 요청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제23조제1항 중 “70배”를 “90배”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자료 또는 정보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5조의3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배우자 (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를 “배우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등 담보권 설정 유무 및 금액

④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제3항의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사가 정하는 정보제공 동의서면을 공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은 법 제34조의2제1항”을 “같다) 및 공사는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의2제1항”을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는”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제21조제1항제10호”를 “제21조제1항제1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 10. (생략) ② ~ ④ (생략)	제21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u>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u> 5. ~ 11. (현행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보증의 한도) ① 법 제27조에 따른 보증의 총액한도는 자기자본의 <u>70배</u> 로 한다. ②·③ (생략)	제23조(보증의 한도) ① ----- ----- ----- <u>90배</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① (생략) ②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관련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u><단서 신설></u>	제25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 요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다만, 제3호의 자료 또는 정보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1. 2. (생략)

<신설>

③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34조의4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4조의

1. 2. (현행과 같음)

3. 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 등 담보권 설정 유무 및 금액

③ -----
----- 배우자-----

-----.

④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제3항의 기금과 관련한 대출을 신청하는 자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하여 이하 “신청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동의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공사가 정하는 정보제공 동의서면을 공사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

----- 같다) 및 공사는 법

2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청자등에 대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 5. (생략)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 4.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1. ~ 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

1. ~ 4.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공사는 -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생략)

② 법 제34조의5제1항제1호에서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채무를 말한다.

1. (생략)

2.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보증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③ ~ ⑥ (생략)

제27조(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성명 등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제1항제11호-----

③ ~ ⑥ (현행과 같음)